

#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

## -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

\* 아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교회가 부교역자를 청빙하는데 있어, 또한 부교역자가 교회를 섬기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교역자의 상황에 맞게 약속할 내용은 빈 칸으로 두었고, 필요한 부분도 알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_\_\_\_\_교회(위임목사 ○○○)이하 “동”)와 \_\_\_\_\_목사/전도사(이하 “역”)는/은 한국교회에 건전한 동역 관계가 조성되어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동역서약(이하 “본 서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제1조 동과 역의 동역과 의무

- ① 동은 역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 신앙 안에서 온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② 역은 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부여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과 소속 교단의 규정 및 동이 마련한 정관과 방침 등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제2조 동역기간

- ① 동과 역의 동역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시작되고, \_\_\_\_\_년 동안 지속됩니다. \*

\* 2015년 기윤실이 실시한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교역자들은 한 교회에서 평균 2.9년(전임목사 3.3년, 전임전도사 2.6년, 파트타임 전도사 2.5년)정도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약 3년 정도 사역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권합니다.

- ② 제1항의 동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동은 역이 동에서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③ 본 서약의 동역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동과 역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본 서약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이 새로 성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 제3조 사역시간

- ① 역이 온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역의 사역시간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1일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조사에 따르면 부교역자의 일일 사역 시간은 평균 10.8시간(전임 목사 11.5시간, 전임 전도사 11.0시간, 파트타임 전도사 9.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사역은 장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윤실은 **선언적인 의미로 일일 사역시간을 8시간으로 약속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실제 사역시간은 아래 3조 2항을 통해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동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역의 사역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은 역에게 대체 휴무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③ 동은 역에게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

### 제4조 사례비

- ① 동은 역에게 사례비로 월 \_\_\_\_\_ 원을 매월 \_\_\_\_\_ 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정 월의 \_\_\_\_\_ 일이 사역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사역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례비에는 본 서약에 따라 역이 수행하는 연장사역에 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③ 본 서약에 따라 역이 사역한 지 만 1년이 지난 후에, 동과 역은 사례비 인상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④ 동과 역은 주거비 · 유류비 · 통신비 · 장학금 · 소속 교단의 목회자 연금 지원 및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5조 휴일 및 휴가

- ① 역이 온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월요일은 휴일로 정합니다.
- ② 역이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은 역에게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 1주씩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전별금

- ① 동역기간이 종료되어 역이 사임하게 될 경우, 동은 역에게 역의 사역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 사례비를 전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전별금은 역이 사임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과 역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서약해지

- ① 동과 역은 동이나 역에게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동이 본 서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역이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분의 사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역이 본 서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이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역은 그 기간 동안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계해야 합니다. 다만, 동이 인계를 원치 않거나 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역이 인계를 하기 어렵거나 계속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8조 기타

- ①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소속 교단의 규칙, 동의 정관 등 제반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 ② 본 서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동과 역이 각 1통씩 보관하겠습니다.

### 년 월 일

동	교회명	연락처
	주소	
	위임목사 성명	(서명) *
역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 "동"의 주체는 교회이고, 위임목사는 "동"을 대표하여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